

#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안년월일 : 2005. 6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개정(2005. 1. 27공포,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)됨에 따라
  -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
  -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3조를 삭제한다.
- 제4조(집회) 제1호 중
  - “매년 7월 13일에 집회한다.”를 “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.”로
  - “총선거가”를 “총선거(지방선거)가”로
  - “의회의 의결로 9월,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”를 “9월 1일에 집회한다.”로 한다.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

## 구미시 조례 제 호

#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 제1호 중

“매년 7월 13일에 집회한다.”를 “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.”로

“총선거가”를 “총선거(지방선거)가”로

“의회의 의결로 9월,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”를

“9월 1일에 집회한다.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조례 제0468호 구미시의회의운영에관한조례 부칙 제2항중 “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명 :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<br/>관한조례</p> <p>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<br/>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<br/>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집회) 영 제 19조의 4의 규정<br/>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<br/>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<br/>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<u>매년 7월 13일</u><br/><u>에 집회한다.</u> 다만, 총선거가 실시<br/>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<u>의회</u><br/><u>의 의결로 9월, 10월 중에 따로 정</u><br/>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<br/>에 집회한다.(개정2001.11.14)</p> | <p>제명 : <u>구미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</u><br/><u>관한 조례</u></p> <p>제3조(회기) <u>(삭제)</u></p> <p>제4조(집회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<u>매년 7월 7일</u><br/><u>에 집회한다.</u> 다만, <u>총선거(지방선</u><br/><u>거)가</u>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<br/>회는 <u>9월 1일에 집회한다.</u></p> <p>2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|

[참고자료(개정전)]

##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
제 정 2000.05.24 조례제0417호

개 정 2001.11.14 조례제046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.)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.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 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,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(개정2001.11.14)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(개정2001.11.14)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(개정2001.11.14)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1.11.14>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6일로 한다.

②(다른조례의 개정)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한다.

[참고자료(개정 후)]

##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 정 2000.05.24 조례제0417호

개 정 2001.11.14 조례제046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.)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.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<삭제>

제4조(집회) 영 제 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일에 개최한다.(개정2001.11.14)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(개정2001.11.14)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(개정2001.11.14)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1.11.14>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6일로 한다.

②(다른조례의 개정)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한다.

부 칙 <2005.06.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